

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5일	
신 청 인	성 명 (대표자명)	국문	상 호 (법인명)	국문	
		영문		영문	
	전 화 번 호		팩 스 번 호		
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홈페이지		
	주 소	국문			
		영문			
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	품명				
	규격				
	형식				
	형식승인 증서번호				
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	
변경사유					

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(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	수수료 품목당 3,0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□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
- 2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
- 3.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「선박안전법」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
- 5. 「선박안전법」 제75조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

처리절차

